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김용판 · 김정재
김태호 · 김태흠 · 박덕흠
성일종 · 안병길 · 이채익
조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,000가구로 2015년 대비 4.8%(약 5만 3,000가구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농가인구는 약 231만 7,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%대 선이 붕괴된 4.5%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.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 대도 50대 이상이 75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·추진해 왔지만,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.

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·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, 후계농어업인의 육성·유입을 장려하기

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“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”에서 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”으로 확대함(안 제6조 및 제9조).

나.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,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(안 제6조).

다.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, 어선,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(안 제9조).

라.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,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

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(안 제1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30호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2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”으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”으로,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50(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100분의 50(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

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60)을 2023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제6조,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(이하 이 조에서 “자경농민”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(「지방세법」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, 밭,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	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00분의 50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
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
세를 추징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
① 어업(양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(2) -----

------100분의 50

(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

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
① -----

----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
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2조에 따른 후계어업
인 및 청년어업인-----

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
· 양식업권, 어선(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)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
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
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
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
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
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
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

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<u>100분의</u> <u>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경 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</u> <u>50(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</u> <u>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</u> <u>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</u> <u>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</u> <u>대해서는 100분의 60)을 2023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